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
번호

513

2024. 3. 22.(금)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3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라. 상정일자 : 제415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(2024년 3월 1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 노사민정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8조)
-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14조)
-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, 지원 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16조 및 제17조)

-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, 용어 등 조문 정비(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- 가. (필요성)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운영방식과 달리 외부 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, 실제 사무국 운영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
- 나.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. (종합의견) 검토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,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, 조례 근거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법규정비를 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”을 “사항과 그 시행”으로, “충청북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”을 “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충청북도내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”로, “충청북도”를 “도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”로, “충청북도내의”를 “도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“충청북도나”를 “도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시·군·구”를 “시·군”으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당해 직위에”를 “해당 직위에”로, “당해 직위의”를 “해당 직위의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위원이 다음”으로, “위원”을 “해당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, “판단될 때”를 “인정되는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제2항 중 “위원중”을 “위원 중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회의”를 “협의회의 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때와 위원”을 “경우와 재적위원”으로, “소집한다”를 “위원장이 소집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과반수 이상의 출석”을 “과반수의 출석”으로, “과반수 이상의 찬성”을 “과반수의 찬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진행 할”을 “진행 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“하부협의체””를 ““하부 협의체”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하부협의체”를 “하부 협의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설치하여 운영”을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지원 등 노사민정 활성화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도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 중 “하부협의체”를 “하부 협의체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과장”을 “사무국장”으로, “노사업무 담당사무관”을 “도 노사업무 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”를 “도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.

제15조 앞에 “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”을 삭제한다.

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

제15조,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6조, 제17조 및 제15조로 한다.

제15조(중전의 제17조)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(중전의 제15조)제1호 중 “충청북도지역본부”를 “도 지역본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도 단위 노사관계 기관·단체

5. 도내 외국인노동자 기관·단체

제17조(중전의 제16조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제16조 각 호에 따른

기관이나 단체가 다음”으로, “경우에 그 비용”을 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홍보,”를 “홍보 및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사업”을 “운영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프로그램”을 “프로그램 운영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2호 중 “상담·교육 홍보 사업 등”을 “상담·교육·홍보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<u>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항과 그 시행</u> ----- ----- ----- <u>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함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책무) <u>충청북도내 노동자</u> 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·사용자·지역주민과 <u>충청북도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</u> 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,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.	제2조(책무)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</u> 내 노동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----- ----- <u>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“ <u>도지사</u> ”라 한다)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	제3조(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<u>충청북도지사</u> (이하 “ <u>도지사</u> ”----- ----- -----

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내의
노사민정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
도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
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·③ (생략)

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충청북도나 지방고용노동관
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
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
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
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
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
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
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
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
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
다. 다만, 직위가 있는 위원
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

----- 도내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도나 -----

⑤ -----
-----.

----- 시
·군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-----

-----.
----- 해당 직위에 -----

기간으로 하며,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
2.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
3.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생략)

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

----- 해당 직위의 -----
-----.

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위원
이 다음 -----
----- 해당 위원-----
---.

1. ----- 그 밖-----
----- 인정되는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위원 중-----

-----.

제7조(협의회 운영) ① -----
-- 협회의 회의-----
---.

② -----

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
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
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
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
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
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
다.

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
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
여 의제별·업종별 분과·특별
위원회(이하 “하부협의체”라 한
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
경우 하부협의체의 구성·운영
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의
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
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
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
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
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
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운

경우
와 재적위원
위원장이 소집한
다.

③
과반수의 출석
과반수의 찬성
.

④
진행할
.

⑤
“하부 협의체”
하부 협의체
.

제8조(사무국) ①
설치·운영
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상
근직원을 둘 수 있다.

영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부서

2.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

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과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.

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·감독한다.

⑤ 그 밖에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신 설>

제9조(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도지사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

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지원 등 노사민정 활성화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.

④ 도지사는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도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사무국의 기능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-----
--- 하부 협의체-----

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성실 이행의무) ① (생략)

② 충청북도,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회의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4조(수당 등)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

-----.

제10조(간사 및 서기) ① 협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.

② ----- 사무국장-----
----- 도 노사업무 담당사무관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성실 이행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도-----

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.

<삭 제>

지원사업

<신 설>

제15조(지원대상) 노사관계 발전
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
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
충청북도지역본부
2. · 3. (생략)
4.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·단
체, 충청북도내 외국인노동자
기관·단체

<신 설>

제16조(지원대상 사업) 도지사는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
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5.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
하기 위한 홍보, 연구사업
6.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
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
램 사업
7. (생략)
8. 산업재해예방 및 사회적응

제3장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

발전 지원사업

제16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.

1. ----- 도
지역본부
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도 단위 노사관계 기관·단
체

5. 도내 외국인노동자 기관·단
체

제17조(지원대상 사업) -----
제1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
단체가 다음 -----
---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
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--
---- 홍보 및 ----
6. ----- 운영
사업
7. (현행과 같음)
8. ----- 프

프로그램

9. ~ 11. (생 략)

12.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역
량 강화 및 상담·교육 홍보
사업 등

<신 설>

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
한 것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
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
한다.

로그랩 운영사업

9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-----
----- 상담·교육·홍보 사업

13.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관계
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운영세칙) -- 조례에서 --

-----.

<삭 제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, 사무국 운영 근거등을 개정하고 그 개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.

○ 작성자

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

관련법령 발췌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는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고용정책기본법

제10조(고용정책심의회)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정책심의회”라 한다)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. 이 경우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.

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

제17조(지역고용심의회 의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) ① 지역고용심의회 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지역고용심의회에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를 둘 수 있다.